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
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황근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위반도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과 동일하게 윤리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유로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추가하고,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·재시험 등 기업부담 완화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9. ~ 4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별표1 제2호사목 중 “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9항”을 “법 제14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3년마다”를 “4년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) [별표 1] 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]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(제5조 관련) 1.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. 다만,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. 2. 평가방법		제5조(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) [별표 1] 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 1]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(제5조 관련) 1. 지정기준 총점 80점 이상인 자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. 다만, C로 평가된 항목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. 2. 평가방법		
항 목	분 야	지 정 대 상 (분야)		평가
		전통식품명인	일반식품명인	(평점)
가. 전통성	(생략)	(생략)	(생략)	25
				20
				15
나. 우수성	(생략)	(생략)	(생략)	25
				20
				15
다. 정통성	(생략)	(생략)	(생략)	20
				15
				10
라. 경력 및 활동사 항	(생략)	(생략)	(생략)	20
				15
				10
마. 계승·발 전 필요성과 보호가치	(생략)	(생략)	(생략)	25
				20
				15
바. 산업성	(생략)	(생략)	(생략)	5
				2
				0
사. 윤리성	(생략)	(생략)	(생략)	5
				2
				2

	0
2)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경우 다)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 우	-20

제12조(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)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9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	(현행과 같음)	5 2 0
사. 윤리성	2)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)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경우 다)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 우	-20

제12조(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) ① -----
-----법 제14조제10항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2(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)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 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 <u>년마다</u>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 야 한다. ②~⑤ (생 략)	제18조의2(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 <u>4년마다</u> ----- -----. ②~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2134